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·기술·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47호, 2025. 3. 25. 공포, 2025. 9. 26. 시행)됨에 따라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상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제3항 중 “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“협력”을 “기상현상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재난”이라 한다)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요청 사유·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③ 기상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 지원여부 및 기간·방법 등을 통보해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전에 지원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호우,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 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상청장

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4(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) ① · ② (생략) ③ 예보관은 <u>법 제17조의3제1항 제3호</u> 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·관리해야 한다.	제2조의4(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법 제17조의3제2항 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<u>협력</u>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·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	제4조의3(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기상현상으로 인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(이하 이 조에서 “기상재난”이라 한다)</u> <u>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</u> ---.
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요청 사유·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.
1.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(이하 “예보관”이라 한	

다)을 통한 지원

2.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
및 장비의 지원

3. 그 밖에 기상청장이 예보 및
특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기상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
지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 지원
여부 및 기간·방법 등을 통보
해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
보 전에 지원을 요청한 기관의
장과 협의하여 지원 기간 및 방
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
구하고 호우, 산불 등 긴급을 요
하는 기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
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
서면 또는 구두로 기상청장에게
수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
경우 기상청장은 지원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필
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